

## 평택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3년도 「생산레벨업지원사업」 공고

평택시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평택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2023년도 평택시 생산레벨업(Level-Up)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평택시 소재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7일

평택시장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1. 사업개요

- ➊ 사업목적 : 평택시 중소기업의 노후화되거나 비효율적인 생산공정 개선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용 절감 유도
- ➋ 사업기간 : 2023. 1월 ~ 2023. 12월
- ➌ 사업방식 : 산·학·연 등을 활용한 공정개선/개발 추진(최대 6개월 이내)
- ➍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평택시에 소재하고, 생산 시설을 갖춘 중소기업체
- ➎ 지원내용 : 생산현장의 공정개선과제 및 공정개선 컨설팅 지원
  - 1) 생산현장의 공정개선과제 지원(필수과제)
    - 생산현장의 공정개선 및 개발 지원
    - 생산설비 정보시스템 구축(ERP, POP, CAPP, PDM 등) 등
  - 2) 공정개선 컨설팅 지원(선택과제)
    - 공정개선과제 발굴, 공정개선 추진계획 수립 및 대응 등
    - 제조장비 및 제품의 파손원인 진단 및 해결 지원 등

- ④ 지원목표 : 10개사 내외
- ④ 지원한도 : 총 소요비용의 60% 지원(기업 당 2,700만원 이내)
  - ※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해당 기업이 부담

과제구분	총사업비	지원금	기업부담금
필수과제 (공정개선과제)	100%	60% 이내 (최대 2,700만원)	40% 이상 (현금)
선택과제 (공정개선 컨설팅)	100%	100% (최대 200만원)	(초과분)

☞ 필수과제만 선택한 경우 최대 지원금은 2,700만원이며, 필수과제+선택과제를 선택한 경우에도 최대 지원금은 2,700만원임.

## 2. 신청자격

-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평택시 소재 중소기업
  - 가.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평택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 ☞ 사업 완료 이전에 평택시 관외로 이전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 나. 기존 생산현장의 생산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기반 중소기업
  - 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2023년도 평택시 생산레벨업지원사업 지원제외 업종 >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여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	주거용건물임대업
	55113	휴양콘도 운영업		68112	비주거용건물임대업
	55119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68119	기타부동산임대업
	55909	그외 기타 숙박업		68121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56111	한식 음식점업		68122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56112	중식 음식점업		68129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56113	일식 음식점업		68221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56114	서양식 음식점업		공공,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96111
	56120	기관구내식당업	96112		두발미용업
	56119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96113		피부미용업
	56131	출장 음식 서비스업	96119		기타미용업
	56192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96121		욕탕업
	56193	치킨 전문점	96122		마사지업
	56194	분식 및 김밥 전문점	96129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56132	이동 음식점업	96912		가정용세탁업
	56199	그외 기타 음식점업	96913		세탁물공급업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접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오락업 및 문화업	91121 91223 91291 91249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테업			

### 3. 지원 제외대상

- 단순 생산설비 교체 또는 구입의 경우
- 생산공정개선/개발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경우(작업환경 개선 등)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가. 부도기업
  - 나.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중소기업
  - 다.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함)
  - 라.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참여기업 대표, 과제책임자 등)
  - 마. 외부감사기업으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중소기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중소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 기관의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지원받은 중소기업
- 이미 생산공정개선/개발을 완료한 과제를 신청한 중소기업

###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 ~ 3. 3(금)

④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egbiz.or.kr](http://www.egbiz.or.kr)) > 로그인 > 신청하기

가.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제출서류를 우편 및 방문 접수  
나. 우편 접수는 2023년 3월 3일 15시 우편소인분까지 인정

④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체크리스트(소정양식) 1부

나. [서식 제1호] 생산레벨업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신용정보·제공 및 조화·활용 동의서, 주관기관 참여확인서, 대행기관 참여  
확인서(해당시), 자문위원 참여확인서(해당시) 포함

다. 사업계획서 6부

☞ 사업비 산출내역 증빙자료 포함

라.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1부

마. 공장등록증 사본(해당시) 1부

바.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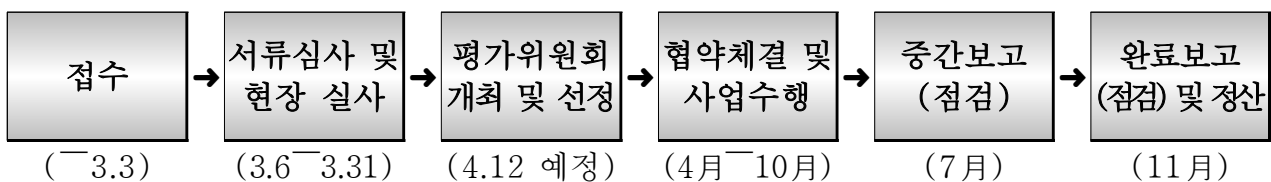
사. 최근 2개년 결산년도 표준재무제표 확인서(관할세무서장 확인) 1부

아. 최근 2개년(1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자. 기타 증빙서류(해당시) 각 1부

☞ 기업 인증서(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벤처기업, INNO-BIZ, MAIN-BIZ,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평택시 인증기업), 지식재산권 출  
원서(최근 5년 이내), 정부 및 공공기관 과제실적(최근 5년 이내)

## 5. 선정절차



※ 상기의 일정 등은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6. 우대사항

④ 평택시 중소기업 지원사업(히든챔피언 육성지원, 중소기업 역량강

화지원, 생산레벨업지원)에 선정된 이력이 없는 중소기업에게 가점 부여(최대 5점)

- ④ 「경기도 기술닥터사업」 참여업체 중 생산공정과 관련된 과제로 컨설팅을 완료하고 해당 과제로 신청한 경우 현장 실태조사 면제  
☞ 주관기관(경기TP) 또는 해당 기술닥터의 확인서(결과보고서 포함)를 제출한 경우
- ④ 대행기관이 대학(교) 또는 연구기관인 경우 현장 실태조사시 가점 부여(10점)
- ④ 대학(교) 교수가 신청과제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경우 현장 실태조사시 가점 부여(5점)  
☞ 자문위원 참여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7. 유의사항

- ④ **평택시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복 선정 불가(중복 신청은 가능)**
  - 평택시 중소기업 지원사업(히든챔피언 육성지원, 중소기업 역량강화지원, 생산레벨업지원 등)에 **중복으로 사업신청은 가능하나**, 추후 각 지원사업의 선정결과에 따라 2개 이상의 지원사업에 중복으로 선정된 경우 1개 지원사업만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지원사업은 자동으로 선정 취소
- ④ **부정행위업체 제재방안 시행**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GBSA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②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 행위 수반시)
    - ③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④ 경기도 및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8. 문 의 처

- 문 의 처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남부권역센터 평택출장소
  - (TEL) 031-651-7162, (E-mail) [shadmoon@gbsa.or.kr](mailto:shadmoon@gbsa.or.kr)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 149, 1층